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실종자 대상 범위 확대 등〉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9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08. 13.
3. 회 부 일 : 2024. 0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실종의 범주를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 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종의 범주를 기존의 실종아동등에서
성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법률 제명, 정의와 국가의 책무 등
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등).
- 나.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신고와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와 정보
시스템 입력 대상에 성인과 노인 실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
2 및 제11조).
- 다. 유전정보의 폐기 사유에 성인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한 때를 추가
함(안 제13조제2항).
- 라. 실종자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현행 ‘실종아동등’(실종 당시 만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외에 ‘성인실종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3조 등, 제8조의2, 제11조, 제13조제2항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u>실종아동등의</u>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u>실종아동등과</u>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실종자의</u> ----- ----- ----- ----- <u>실종자와</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 <u>실종성인</u> ”이란 소재(所在) 또는 <u>생사(生死)</u> 를 알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歸家)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

<신 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 7. (생략)

제3조(국가의 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다. 다만, 제1호나목 및 같은 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실종자”란 실종아동등 및 실종성인을 말한다.

5. -----

-----제6호의-----
-----.

6. -----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

7. ~ 9.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3조(국가의 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실종자의-----

-----.

1. 실종자를-----

2. 실종자와-----

3. 실종자의-----

4. (생 략)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생 략)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5. 실종자의-----

6. 실종자의-----

7. -----실종자의-----

② -----실종자의-----

-----.

1. 실종자에-----

2. 실종자의-----

3. (현행과 같음)

4. -----실종자의-----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실종자의 날과 실종자주간)

① 실종자에-----
-----실종의 발생을-----
-----실종자의-----
-----실종자의-----
--실종자주간으로-----.

② -----실종자
의-----실종자주간의-----

-----.

③ 제2항에 따른 <u>실종아동의</u> 낱과 <u>실종아동주간</u> 관련 행사·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실종자의</u>----- <u>실종자주간</u>-----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실종아동</u>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실종자에</u>----- ----- ----- -----.
제5조(<u>실종아동등</u> 관련 업무 위탁) ① · ② (생략)	제5조(<u>실종자</u> 관련 업무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u>실종아동등</u>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 ----- ----- -----<u>실종자</u>임을----- ----- ----- ----- -----.
1. ~ 5. (생략) 6.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u>아동등</u>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u>아동등</u>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u>아동등의</u>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 <u>실종자</u>를----- ② ----- -----<u>실종자</u>를----- ---<u>실종자의</u>----- ----- -----.
③ ~ ⑥ (생략)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실종자를-----

-----.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자를-----
-----실종자의-----
-----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보호시설-----

-----.

② -----실종자를-----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실종자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실종자에-----

-----.

② -----실종자의-----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사회
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
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
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
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
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
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
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
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사목에 따른 통
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
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
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실
종자의-----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실종자의-----

-----.

② -----실종자-----

-----실종자의-----

-----.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 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생략)

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및 개인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

③ -----
실종자의-----
-----실종자의-----

-----.

④ -----
-----실종자를-----

-----실종자를-----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실종자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① -----
---실종자의-----

---실종자의-----

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략)

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
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
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
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하여 필요
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실종
아동등 발견 업무 이외의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④ (생략)

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3(공개 수색·수사 체계의 구
축·운영) ① ~ ④ (생략)

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실종자를-----

-----.

③ -----
-----보호
자 및 실종성인의 가족에게-----
-----.

1. 실종자-----

2. -----실
종자-----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3(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
수사 체계 구축·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4(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
3. (생략)
4.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
5. (생략)
6. 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

제9조의4(실종자 조기발견 지침 등)

① 경찰청장-----
-----실종자를-----
-----실종자-----
-----실종자-----
-----.

1. (현행과 같음)

2. 실종자-----

3. (현행과 같음)

4. 실종자-----
--

5. (현행과 같음)

6. -----실종자-----

② -----

-----실종자
가-----실종자-----

-----.

1. ~ 12. (현행과 같음)

③ -----

· 장소의 종사자에게 <u>실종아동등</u>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u>실종아동등</u>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0조(출입·조사 등)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실종아동등의</u>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실종아동등의</u>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u>실종아동등의</u>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u>실종자</u>----- ----- ----- ----- ----- ---. ④ -----<u>실종자</u>-----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출입·조사 등) ① ----- -----<u>실종자의</u>----- ----- ----- ----- ----- ----- -----. ② ----- ----- ----- -----<u>실종자의</u>-----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 -----<u>실종자의</u>----- -----
---	--

는 자료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1.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u>보호자가</u>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2. <u>실종아동등을</u> 찾고자 하는 가족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u>무연고아동</u>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u>실종아동등인지</u>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u>실종아동등을</u>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1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② (생략)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생략)	----- ----- -----. 1. ----- ----- ----- ----- -----<u>연고가 명확하지 않은 성인</u> <u>이나 보호자가</u>----- 2. <u>실종자를</u>----- 3. ----- <u>무연고자</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실종자인지</u>-----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① -----<u>실종자를</u>-----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
--	---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2. ~ 3. (생략)

③ · ④ (생략)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2019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연차보고)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② -----

-----.

1. (현행과 같음)

1의2.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하였을 때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실종자의
의-----실종자를-----
-----.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
-----실종자의-----

-----.
-----.

법률 제2019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연차보고) ① -----
-----실종자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실종아동등을</u> 위한 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u>실종아동등과</u>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 3. <u>실종아동등의</u>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현황 4. <u>실종아동등에</u>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5. <u>실종아동등의</u>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통계 6. <u>실종아동등의</u> 가족지원 현황 7. <u>실종아동등의</u> 사례 분석 8. <u>실종아동등의</u>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현황 9. 그 밖에 <u>실종아동등의</u> 발생예방·발견·보호·지원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 ③ · ④ (생략) 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 ----- -----. 1. <u>실종자를</u>----- ----- 2. <u>실종자와</u>----- ----- 3. <u>실종자의</u>----- ----- 4. <u>실종자에</u>----- ----- 5. <u>실종자의</u>----- ----- 6. <u>실종자의</u>----- 7. <u>실종자의</u>----- 8. <u>실종자의</u>----- ----- ----- 9. -----<u>실종자의</u>----- ----- ----- ③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벌칙) ----- ----- -----.
---	---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u>실종아동등</u>을 보호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 정보등을 <u>실종아동등</u>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u>실종아동등</u>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u>실종아동등</u>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u>실종아동등</u>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략) ② · ③ (생략)	1. ----- -----<u>실종자를</u>----- 2. ----- -----<u>실종자를</u>----- ----- 3. ----- -----<u>실종자를</u>----- ----- 제18조(벌칙) ----- -----<u>3년</u>----- -----<u>3천만원</u>-----. 1. ~ 3. (현행과 같음) 4. ----- <u>실종자를</u>----- ----- 제19조(과태료) ① ----- ----- -----. 1. -----<u>실종자</u>-----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 「실종아동법」 상 “아동등”의 범위에는 실종 당시 만 18세미만인 아동 외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가 포함되며,¹⁾ 이에 해당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는 사람의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시설 종사자 등에게 경찰 신고체계에 따른 신고의무 부과²⁾, 실종아동전문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보호시설 등으로 구축된 협력체계 및 정보연계시스템³⁾을 통하여 수색·수사, 위치정보 추적, 유전자검사 등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됨.

<최근 5년간 실종자 접수 및 미발견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총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가출인	
	접수	미발견	접수	미발견	접수	미발견	접수	미발견	접수	미발견
2019	106,188	394	21,551	4	8,360	5	12,479	1	75,432	282
2020	104,619	492	19,146	5	7,078	6	12,272	2	67,612	335
2021	118,584	532	21,379	3	7,166	5	12,577	9	66,259	308
2022	117,822	692	26,416	9	8,344	7	14,527	8	74,936	304
2023	106,108	1,121	25,628	9	8,440	14	14,677	13	74,847	461

※ 미발견 통계는 계속하여 변동하는 통계로 실종 특성상 최근일수록 많음.

※ 자료: 경찰청

-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제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최근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실종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수색·수사, 보호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종아동법」의 적용대상에 비자발적 원인에 의해 실종된 성인실종자도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다만, 「실종아동법」은 제정(2005년 12월) 당시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으로 한정하였고,

이후 개정(2013년 6월)을 거쳐 적용대상을 확대한 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실종 당시 아동의 연령을 상향(14세→18세)하고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를 추가한 것으로, 여전히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려는 입법의 기본 취지는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제19대⁴⁾·제20대⁵⁾·제21대⁶⁾국회에서도 실종아동등의 범위를 성인실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는데, 당시 검토과정에서도 「실종아

4) 2015.9.23.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5) 2016.8.30.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6) 2021.1.15.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동법」은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등 특별한 보호와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련된 법이라는 점이 거론되었으며, 유사한 취지의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⁷⁾되었으나 대표발의자의 원에 의해 철회된 바 있음.

당시 「실종아동법」 개정안과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미반영(임기만료 폐기) 또는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법률의 적용대상을 성인실종자까지 확대할 경우 제한된 경찰력이 성인실종 사건에 집중되어 단서가 빈약하여 실적 확보가 어려운 장기실종아동 찾기에는 무관심할 우려가 있다는 실종아동 부모 단체의 입장⁸⁾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개정안 제3조의2에서는 ‘실종아동의 날’을 ‘실종자의 날’로 변경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당시 6세 아동인 Etan Patz가 등교 중 유괴살해 당한 사건을 계기로 198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동참하는 기념일로 이를 실종자의 날로 변경하는 것은 기념일의 지정 계기와 상징성, 실종아동 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6조에서는 신고의무 대상자⁹⁾를 ‘보호시설 종사자’,

7) 2017.12.12.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019.12.30. 철회

8) 실종아동지킴이대(실아연 제201903-04, 2019.3.20.) 등의 단체에서 이와같은 취지의 의견 제출

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신고의무자에게 성인실종자에 대한 신고의무까지 추가로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실종아동법」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성인실종자까지 확대하여 규율하기보다는 ‘아동등’과는 다른 ‘성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즉, 성인실종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 대응하도록 하며 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성인의 소재발견에 특화된 조치·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 제정이나 규정 마련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는 성인실종자의 신고·발견 등에 관한 특화된 조치를 규정하려는 취지의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541호) 및 된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 등」(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8824호)바 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으며,

-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제22대국회에서는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10)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경찰청은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라는 공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사익이 충돌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도록 현행 실종아동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실종성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입법이 실효적이라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특별한 보호와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련된 「실종아동법」의 제정취지와 경찰력·행정력이 한정적 자원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 시, 법률의 적용대상에 성인실종자까지 추가하는 것은 기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필요한 경우 ‘아동등’과는 다른 ‘성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실종자 수색·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2의 조치 주체를 ‘경찰관서의 장,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44